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22(월)	
		작성 · 문의	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 양성호 / 사무관 양두열 (Tel. 02-3703-2011 / 2013)
* 2월 22일 10:30분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 배포			

신설된 총리 주재 「법질서 관계장관회의」 첫 회의

- 정부,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·추진
-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'힘·이익·억지 논리' 대신 '법의 논리' 필요

< 법 질서 확립 추진 방향 >

- ◆ 불법필벌 준법보장 원칙아래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함
- ◆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집행이 되어야 함
- ◆ 정부3.0의 정신에 입각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함
- ◆ 국민 중심의 협업을 통해 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.

- 정부는 2.22(월)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'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'를 개최하여 「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」을 논의·확정하였다.

* 참석자 : 법무·행자·문화부 장관, 공정위·금융위·권익위 위원장, 국무조정실장, 국세청장, 관세·경찰청 차장, 금감원원장, 부패척결추진단장(국무1차장)

-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·조정 기능을 보장하여,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'법질서·안전 관계장관회의'를 신설, 운영한다.

-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'법질서·안전 관계장관회의'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, 법질서와 국민안전 관련 안건*을 번갈아 논의하되 필요시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.

* **법질서 · 국민안전 분야별 주요 논의사항**

- 법질서 분야 : 부정부패 척결, 민생 부조리 근절, 공공질서 확립, 준법의식 제고, 4대악 근절 등
- 국민안전 분야 : 재난·사고 예방,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, 안전관련 부처간 현안 조정 등

○ 첫 번째로 열린 오늘 회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 부패 척결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‘법질서 관계장관회의’ 형식으로 개최되었다.

※ 참고 1 : 「법질서 · 안전 관계장관회의」 개요

○ 황 총리는 회의에서 ‘법질서 확립’을 “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,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” 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‘생활밀착형 핵심 부패 · 부조리 척결’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.

○ ‘15년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4대 핵심분야*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별로 경제질서 저해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
* △환경사업 △규제개혁 △건설안전 △공동주택 관리

(예시) 환경폐기물 처리 부적정(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등) 관련공무원 등 328명 적발

□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지난 1월 발표한 「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」를 구체화하는 한편, 소비자 보호, 국민건강,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 · 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.

○ 먼저, 국무조정실(부패척결추진단)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·확산될수 있도록 점검·독려하는 한편,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.

○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8개 법집행기관*에서 '16년에 역점 추진하게 될 19개 과제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, △지속(개선여지가 남은 경우) △보완(추진방향을 보완 할 경우) △신규(새롭게 개선할 사항) 추진할 과제들로 구성되었다.

* 법무부, 공정위, 금융위·금감원, 권익위, 국세청, 관세청, 경찰청

○ 금년에 보완 또는 신규 추진할 과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▶ 법무부는 △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△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△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고, 특히, 증권·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.

▶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, 항공권 구매약관*, 해외구매·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·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.

*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 등

▶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'5대 금융악 척결대책'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·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, 불법 사금융, 불법채권 추심, 꺾기, 보험사기

[5대 금융악 척결 추가 보완대책(예시)]

- 불법금융대응단을 신설('16.2.15)하여 5대 금융악을 비롯한 제반 불법금융 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(완료)
- 신종 금융사기 수법의 '그놈 목소리'를 지속 공개하고, 실질적인 범죄 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
-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검토,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 및 소송지원메뉴얼 발간·배포
- 새로 도입된 SNA(Social Network Analysis)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

▶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·수의계약 제한 신설, 직무 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,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한다.

□ 정부는 신설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에 확정된 '16년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국민생활 현장에서 부패·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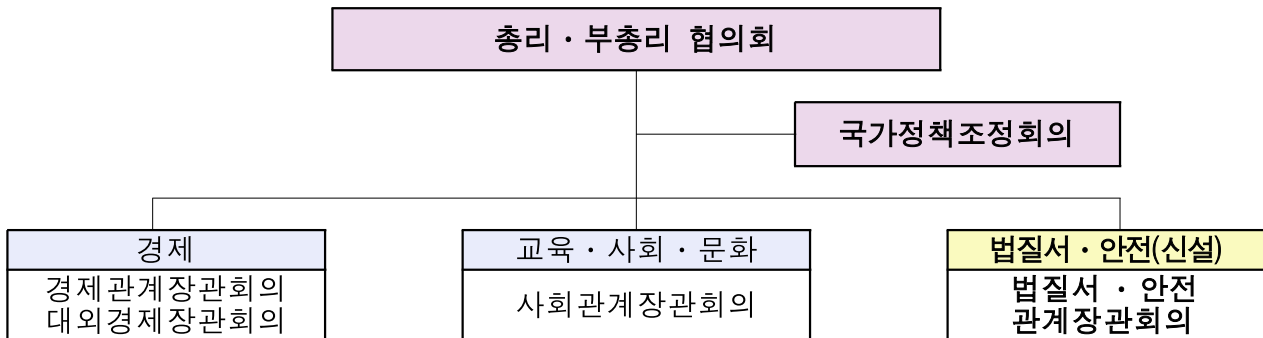
참고 1

「법질서·안전 관계장관회의」 개요

◆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·국민안전 분야 국정회의체를 신설, 국민관심 정책의 현장체감도 제고 및 빈틈 없는 국정운영 도모

□ 명칭 : 법질서·안전 관계장관회의

< 회의체 신설 후, 내각운영시스템 >



※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상임위 중심 논의

□ 운영 방안

○ 개최 주기 : 월 1회 원칙

○ 법질서 / 안전을 주제로 번갈아 논의, 필요시 양 분야 함께 논의

* 예 : (2월) 법질서 → (3월) 안전 → (4월) 법질서·안전

① 법질서 관계장관회의

- 구성 : 법무·문체부 장관, 국조실장, 권익위원장, 경찰청장 + 안전 관련 장관

- 논의사항

- 부패척결 : 반부패 개혁, 국민생활 부조리 근절, 공직기강 확립 등
- 4대악 근절 : 성·가정·학교폭력 및 불량식품 근절
- 기타 : 공공질서 확립, 준법의식 제고 등

② 안전 관계장관회의

- 구성 : 행자·농림·산업·국토·해수부, 안전처 장관, 국조실장 + 안전 관련 장관

- 논의사항

- 안전 시스템 : 재난·사고 예방, 민생안전 확보 등 관련 시스템 개선
- 국민안전 정책 : 주요 안전정책 및 현안 관련 부처간 협의·조정

* 총리 주재 「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」 ‘민간 참여 현장점검’에 중점을 두어 차별화

참고 2

2016년도 법집행기관 우선추진과제

□ 법무부 등 8개 기관, 19개 과제

소 관	과 제 명	비고
법무부 (3)	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	보완
	기업·경제질서 분야 비리	보완
	법조브로커 등 전문분야 비리	보완
공정위 (3)	유통·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 권익침해행위	
	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행위	
	소비자 밀접분야 불공정약관·부당광고 등 불공정행위	신규
금융위 금감원 (3)	국부유출·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	
	주가조작·내부자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	
	민생침해 5대 금융악 (①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 추심 ④격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)	보완
권익위 (2)	국민 건강, 안전,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집중 관리	신규
	「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으로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	신규
국세청 (3)	역외탈세, 기업자금 유출, 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	보완
	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업자의 세금탈루 행위	
	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	
관세청 (3)	블랙머니 조성차단 및 단속 강화	보완
	불량 수입식품 유통·판매 행위	보완
	엄정한 관세조사 및 체납관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	신규
경찰청 (2)	3대 악성사기 (전화금융사기, 노인·중소상공인 상대 사기) 등 민생침해	
	3대 대포물건 (차량·휴대폰·통장) 등 사회적 신뢰 훼손행위	

※ (행자부)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행위 등 추진계획
(문화부) 법질서 확립 홍보계획